

「2026년 작업환경 안전UP 클린UP 지원사업」모집공고

울산지역 내 신규채용 확대 및 고용유지 촉진을 위해, 인력을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「2026년 작업환경 안전UP 클린UP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2월 23일

울산상공회의소 회장

1 사업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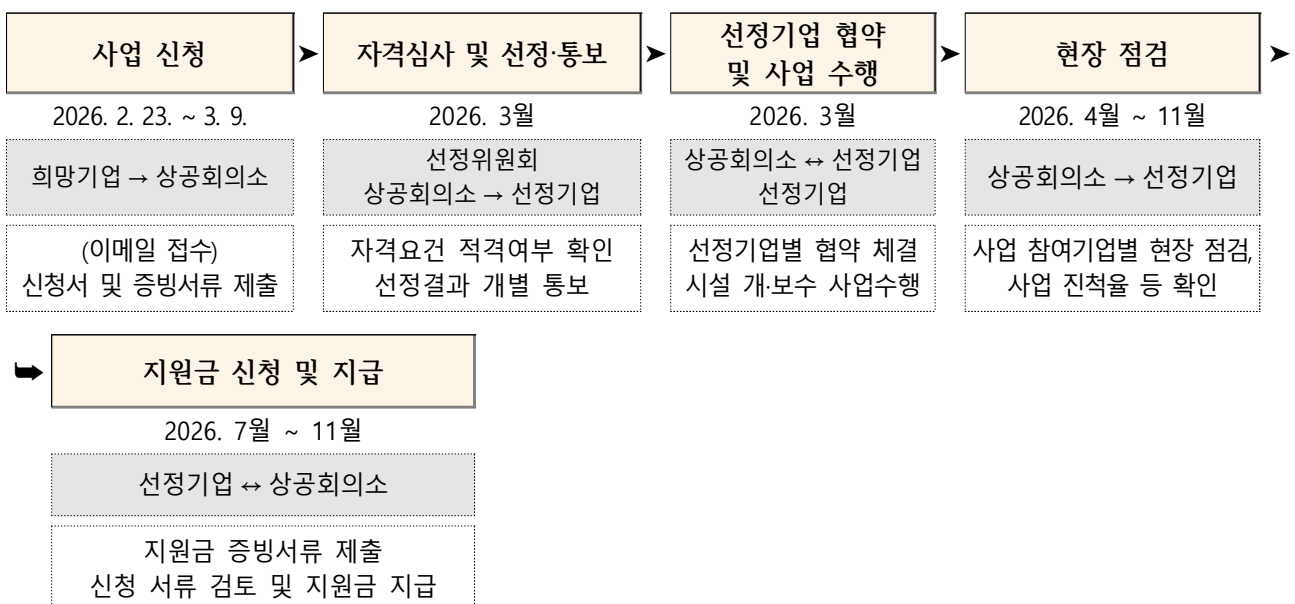
가. 사업명 : 2026년 작업환경 안전UP 클린UP 지원사업

나. 사업기간 : 약정서 체결일 ~ 2026. 12. 31.

다. 지원대상 :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

라. 지원내용 : 사업장 안전시설 및 복리후생시설 개·보수 비용 지원(최대 10백만원)

2 사업 추진 절차



3 신청 방법

가. 신청기간 : 2026. 2. 23.(월) ~ 2026. 3. 9.(월) 18:00까지

나. 신청방법 : 이메일 접수 (jobgo@ucci.or.kr)

- 울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(<http://ulsan.korcham.net>) → 공지사항
→ 공고 및 서식 다운로드 →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※ 신청서류는 한글파일(HWP)과 기명날인 된 스캔파일(PDF)로 각각 1개씩 제출

다. 신청서류

No	서류명	비고
1	사업 참여 신청서	서식 4-1
2	사업 수행 계획서	서식 4-2
3	사업주 확인서	서식 4-3
4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(사업주용)	서식 4-4
5	신규 채용 확약서	서식 4-5
6	사업자등록증 사본	
7	국세·지방세·4대보험료 완납증명서	
8	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(구체적인 견적 및 세부내역(수량, 단가 등) 기재, 공급업체 직인 날인 필수)	
9	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(2024. 12. 31. 기준 / 2025. 12. 31. 기준 / 신청일 직전월 기준)	
10	기타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	

라. 문 의 처 : 울산상공회의소 고용지원팀 (Tel. 052-228-3062)

4 지원 대상

가. '26. 1. 1. 이후 정규직으로 1명 이상 신규 채용 또는 채용 예정인
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

-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 주소가 울산광역시인 사업자등록증 보유 기업
 - ※ 사업자등록증(또는 공장등록증), 중소기업 확인서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)
 - ※ (중소기업)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의 범위)에 따름

< 신규 채용 기준 >

- **(채용시점)** 2026. 1. 1. 이후 근로자를 신규 채용 또는 채용 예정
(신규채용 인정기한 : 2026. 1. 1. ~ 2026. 8. 31.)
- **(채용확약)** 입사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필수
- **(고용형태)**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(정규직, 무기계약직, 정규직 전환자)
- **(근무조건)** 주 40시간 이상, 고용보험 가입, 최저임금('26년 기준 시급 10,320원) 이상 받는 자

< 지원 제외 근로자 >

- ① 사업주(사업주의 배우자 포함)와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 관계(직계 비존속, 형제, 자매 등)가 있는 자
- ②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(단,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)
- ③ 기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지원금을 받는 경우
- ④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(휴학 포함) 중인 자
- ⑤ 기업체에서 파견·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자
- ⑥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도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없는 자로 채용된 경우
- ⑦ 동일 기업 및 관련 사업주 운영 기업에 지난 3개월간 재취업 이력이 있는 경우

< 지원 제외 기업 >

- ①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
※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 등
- ②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- ③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
- ④ 국세·지방세·4대 보험료 체납기업
- ⑤ 동일 대상자 채용으로 '정부 및 지방자치단체' 인건비 지원 성격의 장려금 등을 지원받는 기업
- ⑥ 해당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주가 2024. 1. 1.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「작업환경 안전UP 클린UP 사업」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- ⑦ 그 외 운영기관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5 지원 내용

가. 지원규모 : 8개사

나. 지원금액 : 기업당 최대 1,000만원 이내 지원

- ①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되어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대상자 기준
- ② 시설 개·보수 비용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 (* 부가가치세는 기업 자부담)
- ③ 인테리어 공사, 위생설비 공사 등 실질적인 시설 및 공간 개선 공사만 가능하며, 단순한 가구, 비품, 기기 구매는 지원 제외

다. 세부지원내용 : 근로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환경 시설 개·보수 비용 지원

지원 항목	지원 분야
복리후생시설 환경개선	· 화장실, 샤워실, 휴게실, 구내식당, 체력단련실, 탈의실 등 근로자 복리후생시설 비용 지원
작업장 안전 환경개선	· 작업장 안전 관련 시설 개·보수 비용 지원

※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항목 중복선택 가능

6 선정 방법

가. 선정일자 : 2026. 3월 중

나. 선정방법 : 서면심사 평가

다. 선정위원 : 외부전문가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

라. 선정기준

- 심사위원 평균점수 고득점자 선정
- 합산 점수가 같을 경우 심사위원 협의에 의해 선발
- 선정기업이 중도 포기 시 고득점 순으로 차순위 후보 기업 지원

마.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

심사항목			심사지표				
총 점			100점				
정량 평가 (70)	1. 일자리 창출		40점				
	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수 (25년 인원 - 24년 인원)	25	20명이상	15명이상	10명이상	5명이상	5명미만
			25	20	15	10	5
	②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 (증가수 / 24년 인원 × 100)	15	20%이상	15%이상	10%이상	5%이상	5%미만
			15	12	9	6	3
	2. 고용안정 분야		30점				
① 고용유지율 (24년재직자 중 26년 고용유지 인원 / 24년 인원 × 100)	20	80%이상	70%이상	60%이상	50%이상	50%미만	
		20	16	12	8	4	
② 기업 업력 - 공고일 기준 기업설립일	10	10년이상	7년이상	4년이상	1년이상	1년미만	
		10	8	6	4	2	
정성 평가 (30)	1. 작업환경개선 적합성		15점				
	① 작업환경개선 필요성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	15	매우적합	적합	보통	다소부족	부족
			15	12	9	6	3
	2. 고용유지 노력		15점				
① 고용유지 노력 및 향후 채용실시 계획	15	매우적합	적합	보통	다소부족	부족	
			15	12	9	6	3

바. 선정결과 : 개별 통보

7 기타 유의사항

가.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중도해지, 지원금 반환·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.

나.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수행기관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

- 다. 대상기업이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.
- 라.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 청구가 우려되는 참여자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·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.
- 마.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
- 바. 대상기업은 수행업체(공급업체) 선정 시, 신청서 및 계획서 내 추진 내용과 부합한 업태/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로 선정해야 하며,
- 사. 대상기업 신청인 본인과 민법상 친·인척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수행업체로 선정해야 함.
- 아. 대상기업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 수행 이후 정산, 사후관리 지도(완료평가)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,
- 자. 수행 종료 이후 완료보고서와 정산서류를 수행기관으로 제출, 자료 미비 시 수행기관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.

붙임 1. 제출 서식 1부.

2. 「2026년 작업환경 안전UP 클린UP 지원사업」 운영지침 1부. 끝.